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다시,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2022년 6월 14일(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6.14.(화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6. 13.(월)	담당부서	석탄광물산업과
담당과장	임형진 과장(044-203-5260)	담 당 자	임성균 사무관(044-203-5261)

「석탄산업법 시행령」 개정안 6.14(화) 국무회의 의결

- 석탄 및 연탄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 및 취소 절차 등 구체화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이창양)는 **석탄 및 석탄가공제품**(연탄)**에 대한 가격안정지원금 지원**에 필요한 법률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「석탄산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이 **6.14.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**되었다고 밝힘

< 석탄산업법('21.12.21. 개정, '22.6.22. 시행) **주요내용 >**

-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및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- 석탄가공업자가 석탄광업자 외의 자로부터 석탄가공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석탄을 공급받는 경우, 해당 석탄에 대한 품질기준 준수 의무 부과를 규정
- 과징금 상한액 현실화(1,000만원 → 3,000만원)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□ 금번 시행령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인 가격안정지원금 ①**지원의 대상·방법·절차**, ②**지원의 취소·환수 절차**, ③**지원 제외의 기준**, ④**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구체화** 등임

○ **가격안정지원금 지원대상**(석탄광업자, 석탄가공업자, 연탄을 운송하는 자)을 **설정**하고 **지원금을 받기 위한 세부 절차*** **등을 마련**

* 지원신청서 제출, 법인 등기사항증명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확인, 지원 여부 결정시 문서 통지, 지원방식(계좌이체, 현금), 그 외 필요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

○ 가격안정지원금 **지원 취소 및 환수시** 그 사유 및 환수금액 등을 **문서 통지**하고 환수금 **납부 방법** 및 **미납시 독촉 절차 등을 마련**

○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**가격안정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는 경우*를 규정**하고,

*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을 거래,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을 거래하는 경우

- 별표2 신설을 통해 **위반행위별*로** 가격안정지원금 **지원 대상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제외하는 기준을 구체화**

*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수급, 지급 요건 미충족, 최고액 위반 판매, 광물생산보고서 미등재 석탄 거래, 생산규모 감축에 대한 지원사업의 대상자 외의 자가 생산한 석탄 거래

○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**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*를 구체화**

* 석탄산업 실태조사, 가격안정지원금 신청의 접수·검토·지급, 지원금 환수, 석탄·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, 석탄·석탄가공제품 수급 안정을 위한 서류제출·보고 요청 등

□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운영해 온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에 대한 **가격안정지원 제도의 명확한 법적 운용 근거가 마련**됨으로써,

○ 가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으로 야기되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(연탄) **유통 시장의 교란 행위를 원천 차단**하고 궁극적으로 **연탄 소비자에게 양질의 연탄을 공급하는데 기여할 것**으로 **기대**됨

□ 향후, 산업통상자원부는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가격안정지원 제도에 대한 **철저한 관리를 통해 물가안정과 서민생활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**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석탄광물산업과 임성균 사무관(☎ 044-203-526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